2027년도 유아숲지도사(산림교육전문가) 전문과정 11기 교육생 모집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아숲지도사양성사업단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거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입니다.
'유아숲지도사(산림교육전문가)' 전문과정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며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내 용</th><th>비 고</th></tr>
<tr><td>접수기간</td><td colspan="4">2026. 11. 23. (월) ~ 12. 18. (금)</td><td>* 선착순 접수
*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 기간 연장</td></tr>
<tr><td>교 육 생
확 정</td><td colspan="4">2026. 12. 19. (토)</td><td>* 개별 안내</td></tr>
<tr><td>모집인원</td><td colspan="2">국비지원 수강생</td><td>32명</td><td rowspan="2">40명</td><td rowspan="2">* 100% 자비부담 접수인원 미달 시 국비지원 접수자로 충원</td></tr>
<tr><td colspan="2">100% 자비부담 수강생</td><td>8명</td></tr>
<tr><td>접수방법</td><td colspan="4">기간 내 이메일 접수</td><td>* 이메일: 157abc@jbnu.ac.kr
* 연락처: 063-219-5584</td></tr>
<tr><td>제출서류</td><td colspan="4">1.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해당자)
3. 본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해당자)
4. 본교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해당자)</td><td>*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도장이나 서명 후 제출</td></tr>
<tr><td rowspan="5">수 강 료</td><td colspan="2">국비지원</td><td colspan="2">미확정
(26년: 765,000원)</td><td rowspan="5">* 국비지원 자비부담액
-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 100% 자비부담 교육생에 한하여 수강료 할인 가능
* 접수 시 첨부서류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본교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 수료생: 수료증 사본</td></tr>
<tr><td rowspan="4">100%
자비
부담</td><td>일 반</td><td colspan="2">2,000,000원</td></tr>
<tr><td>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td><td colspan="2">1,800,000원
(200,000원 할인)</td></tr>
<tr><td>전북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td><td colspan="2">1,800,000원
(200,000원 할인)</td></tr>
<tr><td>전북대학교
산림치유지도사양성과정
수료생</td><td colspan="2">1,800,000원
(200,000원 할인)</td></tr>
<tr><td rowspan="3">수 강 료
납 부</td><td colspan="4">2026. 12. 21. (월) ~ 12. 23. (수)</td><td rowspan="3">* 2026. 12. 19. (토) 교육생 확정 후 수강료 납부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국비지원 시 수강료는 [자부담액+국비지원액]으로 구성됨
* 개인별로 자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td></tr>
<tr><td colspan="2">국비지원</td><td colspan="2">카드결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td></tr>
<tr><td colspan="2">100% 자비부담</td><td colspan="2">계좌이체
* 3회 분할납부 가능
* 현금영수증 발행</td></tr>
</table>

○ 수강료 환불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반환

» 폐강시			전액 환급
» 교습시작 전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1)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미환급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교육운영기간 (*교육운영 기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오리엔테이션	**2027. 1. 09. (토)**	* 교육과정 일정은 운영 상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일정은 교육생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교육기간	**2027. 1. 09. ~ 07. 24.** **실습: 4. 21. ~ 8. 21.** 예정 (기간 내 **30시간 이상 필수이수**)	
평가기간	**2027. 8. 28. ~ 9. 26.**	
강의요일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3~4시간 수업 * 매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4~8시간 수업 ※ 주 2회 실시 (수업 시간은 교과목별로 상이함)	

○ 교육과정

▶ 교육구성

- 이론 및 실습 강의 203시간 + 교육실습(현장실습) 30시간
- 이론평가 및 시연평가 (각 평가 70점 미만 시 2회 한정하여 재시험 운영)

▶ 교육절차

신청서 접수 → 교육생 확정 → 교육생 등록 →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진행
→ 교육실습(30시간) → 이론평가 → 시연평가 →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신청 및 교부

구 분		교 과 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산림교육정책(권장시수)			1	1	-
공통과정	산림교육론 (12시간)	산림교육의이해	3	3	-
		나무·숲·임업	3	3	-
		숲해설개론	3	3	-
		산림휴양·문화	3	3	-
	산림생태계 (24시간)	산림생태학	6	6	-
		식물의이해	18	6	12
	기본 소양 (6시간)	리더십과인성	6	6	-
	합 계		42	30	12

구 분		교 과 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전문과정	산림생태계 (21시간)	곤충의이해		6	2	4
		야생동물의이해		10	4	6
		산림토양학		5	2	3
	커뮤니케이션 (13시간)	커뮤니케이션기법		6	3	3
		멀티미디어활용법		7	3	4
	유아교육 (25시간)	유아교육개론		9	9	-
		유아발달론		8	8	-
		숲유치원과특수아동지도		8	6	2
	유아숲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81시간)	유아숲생태교육개론		10	6	4
		유아숲체험원의운영관리		6	3	3
		숲유치원운영사례		3	3	-
		숲교실만들기		3	3	-
		유아숲생활지도		6	4	2
		유아숲지도사론		6	4	2
		유아숲생태교육프로그램개발		10	4	6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	동화로만나는생태놀이	6	2	4
			생태미술,자연물조형활동	5	2	3
			신기한꽃누르미	4	2	2
			목공,자연이준선물	6	3	3
			유아숲놀이지도	8	3	5
			유아숲밧줄놀이	5	2	3
			유아숲체험을위한산림치유자원	3	2	1
	안전교육 및 관리 (20시간)	응급처치		12	4	8
		야외활동지도		4	2	2
		아동안전관리		4	4	-
	교육실습 (30시간)	국가·지방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30	-	30
	합 계			190	90	100
총 계				233	121	112

○ 유의사항

1.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은 대면 강의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국비지원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국비지원 시 자부담액은 '고용 24'에서 확인가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전화) 1577-7114**
4. 현장교육(이론실습 등), 교육실습 시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5. 다음의 경우 합격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2)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940호, 2011.7.25.]에 의거 제한된 자(결격사유 조항 해당자)는 유아숲지도사가 될 수 없으며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않은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북대학교 유아숲지도사양성사업단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 323호
- 연락처: 063-219-5584